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Competition) 입상자 특전

① 훈·포장, 표창 및 상금 수여

(단위 : 천원)

등 위	포 상	상 금
금 (1 위)	동 탑 산 업 훈 장	67,200
은 (2 위)	철 탑 산 업 훈 장	56,000
동 (3 위)	석 탑 산 업 훈 장	39,200
우 수 상 (4 위 이 하)	산 업 포 장	10,000
미 입 상 자	고 용 부 장 관 표 창	

< 관련 근거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법 제22조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 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병역 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편입

< 관련 근거 >

- 병역법 시행령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진학자 장학금 지급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 은, 동 수상자로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재학생(또는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급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 장학사업 - 장학생선발 - 기탁장학생 참고

④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입상 후 동일 분야 1년 이상 종사자에게 지급

(단위 : 천원)

근속연수	금	은	동
1년	9,500	7,160	5,050
2년	9,790	7,380	5,190
3년	10,060	7,560	5,330
4년	10,330	7,760	5,470
5년	10,620	7,960	5,600
6년	10,890	8,180	5,750
7년	11,180	8,380	5,890
8년	11,440	8,590	6,020
9년	11,710	8,780	6,170
10년	12,000	9,000	6,300

< 관련 근거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대상)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한다.

⑤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 “www.q-net.or.kr-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제도-면제정보” 참고(모든 직종 입상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관련 근거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면제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이하 생략).